

# 강원관광대학 직원징계위원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규정은 학교법인 분진학원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.) 제 7조에 의거 직원징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법인이 설치한 각 급 학교의 일반직원(이하 “직원”이라 한다.)에게 적용한다.

② 위원회에 고나하여 법령, 정관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인이사 및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괄한다.

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미리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법인사무국 법인과장이 이를 겸임한다.

제 4 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5 조 (제척)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. 이로 인하여 위원회의 정족수가 되지 않을 때에 이사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## 제 2 장 징계의 절차

제 6 조 (징계의결 요구) 임명권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한 후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) 임면권자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징계의결의 기한)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9 조 (징계사유의 시효)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

제 10 조(진상조사 및 의견 청취)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  
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 11 조 (위원의 기피 등) ①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 
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 
③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이사장에게 임시위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징계의결 시 정상참작 등)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, 근무성적, 공적, 개전의 정, 징계요구의 내용,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징계의결)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  
② 임면권자가 제 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 
③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이사장 및 각급 학교의 장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 
④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이사장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회송하여야 한다.

- 제 14 조 (징계의 종류) ① 징계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, 견책으로 구분한다.
-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을 정지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.
-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,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.
-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.

제 15 조 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 제 3 장 재심위원회

- 제 16 조 (재심위원회의 설치) ①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, 기타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분진학원에 직원 재심위원회 (이하 “재심위원회”라 한다.)를 설치한다.
- ② 재심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(임명)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재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- ③ 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.

제 17 조 (재심청구)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 의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- 제 18 조 (재심의결) ① 재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재심위원회의 의결방법 및 처리방법은 재심위원회에서 정한다.

- 제 19 조 (징계처분의 정정 및 손해배상) ① 이사장은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한 재심 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이미 행한 징계처분을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.
- ② 재심의결의 결과 이미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확정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배상의 결정은 재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 20 조 (운영세칙)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고나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제 4 장 보 칙

제 21 조 (회의의 비공개) 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 22 조 (세부사항) 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이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 23 조 (준용) 직원 징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국가공무원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

## 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.



<별지 제2호 서식>

## 출석통지서

인적사항	성명		생년월일		성명	
	소속		직급		직위	
	주소	(전화 : )				
출석이유						
출석일자						
출석장소						
유의사항	1. 2회 이상 소환하여도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. 2.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것.					
학교법인 분진학원 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출석을 통지함.						
년 월 일						
학교법인 분진학원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장 (인)						
(징계대상자) 귀하						

<별지 제3호 서식>

## 징 계 의 결 서

개 회 일 시	개 회 장 소			
	소 속	직 위	직 급	성 명
징계혐의자 인 적 사 항				
의 결 주 문				
이 유				
<p>위와 같이 징계 의결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학교법인 분진학원 직원 징계위원회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위원장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위 원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위 원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위 원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위 원 (인)</p>				





## 재심청구서

인적사항	성 명		생년월일		성 명	
	소 속		직 급		직 위	
	주 소	(전화 : )				
재심 청구 사유						
첨부 서류	1. 징계의결서(또는 처분통지서) 사본 2. 재심에 필요한 증거					
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. 년    월    일 청구인  (인) 학교법인 분진학원 직원 재심위원회 위원장 귀하						

<별지 제6호 서식>

# 징 계 의 결 서

개 회 일 시	개 회 장 소			
	소 속	직 위	직 급	성 명
징계혐의자 인 적 사 항				
의 결 주 문				
이 유				
<p>위와 같이 징계 의결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학교법인 분진학원 직원 징계위원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원장 (인) 위 원 (인) 위 원 (인) 위 원 (인) 위 원 (인)</p>				